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4나12880
원고, 피항소인	원고보험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피고보험 주식회사
판결 선고일	2005. 5. 27.
쟁 점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에 있어서 상법 제672조의 중복보험 규정의 적용 여부
결과 (주문)	피고의 항소기각(원고 전부 승소)
참 고 조 문	상법 제672조, 제725조의 2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원고는 소외 A와 사이에 A소유의 차량에 관하여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 특약부 자동차종합보험계약(기명피보험자는 A이고, A의 아들인 B는 피보험자이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A의 아들인 B와 사이에 B소유의 차량에 관하여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특약부 자동차종합보험계약(기명피보험자는 B이다)을 체결한 보험자인데, B가 자신의 어머니인 A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C운전의 차량과 충돌하여 B가 두개 골 함몰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에 따라 원고가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지급기준에 따라 피보험자인 B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 원고의 주장

원고가 A와, 피고가 B와 각 체결한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특약은 모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B가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2개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로서 상법 제672조에서 규정한 중복보험에 해당하므로 원고와 피고는 연대하여 B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보험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의 주장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특약은 그 본질이 상해보험으로서 인보험이고 인보험에 있어서는 피보험이익의 관념이 존재할 수 없어 상법 제672조의 중복보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 쟁점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특약(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에 있어서 상법 제672조의 중복보험 규정의 적용 여부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특약이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을 경우에 보험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상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피보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발생한 위해를 보험사고로 하다는 점에서 피보험자 입장에서 본다면 인보험인 상해보험적 성격이 강하지만, 다른 한편 이 사건 각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특약에 의한 보험은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피보험자 1인당 보상한도가 1억 원으로 정하여져 있으나, 그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적으로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 또는 상해의 손해를 입게 됨으로써 전보되지 못하는 실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는 점, ② 또한,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특약에 있어서 손해액은 피보험자에 대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은 지는 배상의무자의 책임을 전제로 산정하는 점, ③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특약은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의 사고로 신체의 손상을 입어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험보호를 받을 수 없는 때에 그 손해를 보상하고자 하는 보험이므로 보험자는 무보험자동차인 가해차량의 책임보험자의 지위에서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보험금의 지급책임자인 보험자의 입장에서는 그 실질이 책임보험의 성격을 띠고 있는 측면이 강한 이른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특약의 이러한 2가지 측면 중 적어도 보험금지급당사자인 보험자의 다른 보험자 또는 배상의무자에 대한 구상관계에서는 책임보험적 성격이 강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측면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각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특약은 모두 이 사건 사고로 B가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 개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상법 제672조 제1항의 중복보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B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1/2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판결의 의미

우리 대법원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의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특약을 상해보험으로서 인보험으로 파악하고 있거나(1999. 2. 12. 선고 98다26910 판결 참조), 손해보험으로서의 성질과 함께 상해보험으로서의 성질도 갖고 있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서 파악하고 있는데(2003. 12. 26. 선고 2002다61958 판결 등),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특약에 상법 제672조의 중복보험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아직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지 않고, 하급심 판결례 중에는 중복보험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서울중앙지법 2004. 5. 19. 선고 2003나30660 판결 및 이 사건의 원심판결이 있고, 중복보험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수원지방법원 2004. 10. 29. 선고 2004나2129 판결례가 있을 뿐이었는데, 본 재판부에서는 위 서울중앙지법의 판결례 및 원심판결과 견해를 같이 하였다.

이 사건은 상고되어(접수일 2005. 7. 7.) 2005다35516호로 계류 중이다.